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바뀐다.



박 주 안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I. 서언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법률 제951호로 의장법이 새로이 제정된 이후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변천사를 개괄해보면, 1980년 개정법에서는 조 약우선권제도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도입되었고, 1997년에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7개 물품을 대상으로 무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한편 복수디자인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부분디자인제도와 화상디자인제도를 시행하였고, 2004년에는 글자체를 디자인의 보호객체로 추가하였으며,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였다.

오늘날 기업환경은 반도체 등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한 제품의 제조기술이 평준화되어감에 따라 디자인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디자인을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개선하는 수단이 아닌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의 수단(Design as innovation)으로 활용하는 ‘디자인 경영’¹⁾²⁾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듯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디자인 산업체·학계 등에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과 의견들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기업체 방문조사, 학계 및 변리사와의 간담회 등³⁾에서는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환경변화와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2009년 초에 우리나라 『디자인 법·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3-STEP 전략』⁴⁾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1) ‘디자인경영’은 ‘특허경영’, ‘브랜드경영’, ‘디자인경영’을 포함하는 개념인 ‘자식재산경영’의 구성요소이다. 여기에서 ‘자식재산경영’이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노하우, 기업 이미지 창출을 위한 브랜드·디자인을 권리화하고 재산으로서 보호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디자인경영’이란 전략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기업경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애플사의 스티브잡스는 “사람들은 대부분 디자인을 걸포장품으로 생각한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중심에 있는 영혼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디자인은 21세기 최후의 승부처이다.”라고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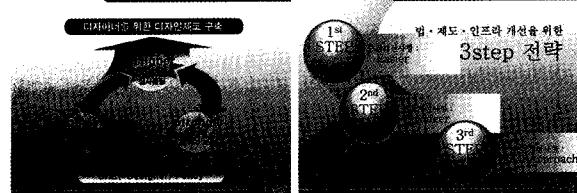
3) 설문조사는 2008년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특허정보원 플랜터에 의해 2007년 디자인 다출원 고액 1천 명에 대한 진화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기업체 방문조사 및 간담회 등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요 요구 및 자적사항〉

○ 강한 디자인 창출, 도면요건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
· 디자인 컨셉(concept)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함
·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에도 관심 필요
· 디자인 보호범위의 점진적 확대 요청

- 도면작성 Tool 개발·보급
- 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 요청
 - 물품(또는 디자인) 트렌드의 빠른 변화를 실사시스템에 적시 반영
 - 비슷한 물품은 한 번의 출원 및 등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 대용도 물품의 출현에 따라 물품범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디자이너, 학생들에 대한 디자인 권리화 교육·홍보 강화 등

4)





1단계 전략⁵⁾에 이은 2단계 전략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도 최근 디자인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2009년 12월에 『21세기 디자인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류도약을 위한 디자인혁신, 디자인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디자인 영토 확장, 디자인강국 도약을 선도 할 창의적인 디자인 인재 육성, 국민의 관심과 향유를 통한 국가 디자인 수준 제고라는 5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보다 먼저 2008년 12월에는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2008~2012)』에서 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디자인권 보호기간 연장, 침해유형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디자인제도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디자인보호법 독자법화를 위한 개편 방안 연구(2008)』,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2008)』 등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작년 8월부터 3-STEP 전략과 관련한 『디자인 비전』을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2008년의 설문조사에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법률안 초안의 내용을 확정짓기 위한 디자인 다출원업체 대상 간담회, 변리사와의 열린 간담회, 지역 순회(서울, 부산) 개정 디자인보호법 설명회, 한국캐릭터협회·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디자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올해 초까지 20차례 이상 진행하는 등 다양한 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 수렴과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전 입법 절차를 진행하였다.⁶⁾ 아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개정 배경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둘째,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셋째,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및 복수디자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데에 있다.

2.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 국제적 규범에의 대응

(1) 디자인의 대상영역의 확대(안 제2조제1호)

1) 개정 이유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물품’⁷⁾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

5) 1단계 전략의 주요내용은 세계 최초 3D 도면제출 허용, 도면작성방법 및 제출 개수 자유화, 무심사출원 품목의 확대, 한 벌 물품 품목의 확대 등이다.

6)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에 그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수차례의 디자인, 기업체, 학계, 변리사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에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및 그 후 2개월에 걸친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입법예고 이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법제처 수정을 거치면서 입법예고된

법안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핵심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물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국의 입법례로는 유럽공동체(EU) 디자인보호규정(Council Regulation)을 들 수 있다. 동 규정 제3조에서는 ‘물품(product)’이 ‘일체의 공업제품 또는 수공업제품을 의미하며 특히 합성물의 구성부품, 포장, 복장, 그래픽 심벌 및 활판 활자체 등을 포함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도 디자인 환경변화에 따라 ‘물품’의 범위에 물품의 부분(화상디자인 포함)(2001년)과 글자체(2004년)를 추가하여 디자인의 보호 대상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올해 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⁸⁾(이하 ‘로카르노협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분류체계를 ‘로카르노분류’라 한다)에 의한 물품 명칭 및 분류를 우리 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⁹⁾에까지 디자인의 보호 대상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동안 디자인 산업계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저작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중첩보호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아닌 로고, BI, CI, 그래픽 심벌 등 2차원적인 물품 및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까지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디자인 환경과 고객의 수요변화에 따라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물품의 범위는 가변적이며 이에 따라 물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요즘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등도 장차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포함되어야 할 보호가치 있는 디자인의 대상영역일 수도 있으며,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와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개정 내용

당초 입법예고 안에는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의 입법 예처럼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¹⁰⁾,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에 대한 규정의 예를 참조하여 법 제2조제1호의 팔호 부분에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물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 등에 물품의 명칭 및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물품류의 구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현 행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形狀·模様·色彩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條(디자인등록출원) ①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物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物品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개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는 제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 (생략)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의 구분(이하 “그 물품류의 구분”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대 (안 제43조제2항 신설)

1) 개정 이유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

8) 원문은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으로 디자인에 관한 분류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으로 등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카르노분류는 32개류(Classes), 219개 Subclasses, 7,024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wipo.int/classifications/locarno/en/index.html> 참조).

9) 로카르노분류상 제32류에는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등이 물품의 예시로 들

어가 있다.

10) 당초 입법예고 안은 제2조제1의3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었다. “의3.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자인권의 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인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43조제2항에 신설하게 되었다.

2) 개정 내용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¹¹⁾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¹²⁾ 또한, 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다용도 물품의 출현에 따른 디자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디자인 컨셉(concept) 자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13) 14)}

현 행

第43條(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表現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신 설〉

개정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진다.

1.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또는 견본
3.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도면에 적혀 있는 디자인의 설명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5조제2항)

1) 개정 이유

외국의 유명 디자인의 형상, 모양 등을 모방하거나 이들을 결합하여 국내에서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지재권 침해국가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다.¹⁵⁾

11)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범위까지 미치게 되는데(법 제41조) 보호범위 판단주체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판례(대법원 1996.1.26 선구 95후 1135 판결), 심사기준(제4조제4항) 및 외국의 입법(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10조 : 견문이 넓은 사용자, 여기서 '견문이 넓은 사용자'란 제품의 최종 사용자보다는 넓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의 수집가(collector)나 소매상(retailer)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를 참조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12)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10조에서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 공동체디자인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의 범위에는 견문이 넓은 사용자(the informed user)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한다. 제2항 : 보호의 범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창작자의 자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성을 전제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 다용도 물품의 경우 해당 디자인을 해당 물품 모두에 출원해야만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양한 디자인권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디자인제도의 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개정법률안에서는 전통적인 3차원적 물품 외에 로고/노부분/색상/형태 등 2차원적인 로고 타입(Logo type),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등을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됨에 따라(개정법률안 제2조제1호) 디자인 컨셉 자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의 심사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허청에서는 전용 기능한 물품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특정 물품 검색시 이를 부분별로 하여 검색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심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

써 검색에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의 대상영역이나 보호범위 확대에 따라 법 이용자들의 다소간의 혼란과 특허청의 심사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는 특허청에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다만, 디자인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오늘날 비용만 많이 들고, 권리는 억하며, 베키기가 만성화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향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디자인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경직된 제도의 운영으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디자인 출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디자인 경쟁력 저수에서도 2005년 1위에서 2007년 3위로 주목한 일본의 시래를 탄산지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4)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36조제6항에서도 물품의 명칭 및 분류,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상표에서의 상품과는 달리, 모든 제품을 포함하며 시장에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및 도면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견문이 넓은 사용자(the Informed User)'를 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물품의 분류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저장 및 통계처리와 관련되어 이는 또한 김색에도 활용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명 디자인을 현지에서 침해시 그에 대한 제재를 해당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외국의 유명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시행되어야 함은 상호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전제라 할 것이다.

2) 개정 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주지된 형태에 대해서도 용이 창작 규정을 적용하여 디자인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였다.¹⁶⁾

현 행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國내에서 널리 알려진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 의하여 용이하게 創作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 정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또는 國내나 國外에서 널리 알려진 形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42조 등)

1) 개정 이유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유사디자인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다. 종래 유사디자인 제도하에서는 제42조에 따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하게 되므로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으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¹⁷⁾ 둘째, 우리나라가 2012년에 가입할 예정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¹⁸⁾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인지 유사디자인인지에 따라 권리의 존속기간 및 효력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존속기간과 권리범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¹⁹⁾

2) 개정 내용

(가)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 및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안 제7조제1항)

-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 부여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유사디자인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나) 출원시기의 제한(안 제7조제1항 단서)

-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권리가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출원시기를 기본 디자인의 등록이 게재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전까지만 할 수 있게 하였다.²⁰⁾

16) 일본의 경우 용이창작 기준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주지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17) 대법원 1989. 8. 9.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2008. 12. 24. 선고 2008후1643 판결 등

18) 원문은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이다.

19) 특허청에서는 헤이그협정 가입 결정에 따라 유사디자인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유사디자인 제도는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의 유용성이 있다는 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존치시키되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되었다.

20) 유사디자인의 출원시기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유사디자인의 출원

일까지는 평균 3.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동시출원이 60.5%, 동시출원을 포함한 1개월 이내가 전체 대비 7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기초로 당초 개정안에서는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를 기본디자인 출원 후 1개월까지로 한정하였으나 디자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1개월의 시기는 너무 단기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디자인의 등록공보 발행일까지로 하게 되었다. 한편,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를 디자인의 ‘공지’ 개념과 연계시켜 일본이 공지일로 보는 공보발행일에 대응되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 출원시기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디자인의 공지 개념과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는 논리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다)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부여 (안 제40조제1항 단서 삭제)

- 현행 제40조제1항 단서의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련디자인에도 독자적인 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의 안정성을 높였다.

(라) 독자적인 권리범위의 인정 (안 제42조 개정, 안 제68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 현행 제42조의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관련디자인 또는 그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¹⁾ 또한,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여 기본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관련디자인등록은 무효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속되도록 하였다.

(마) 관련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의 제한 (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 권리범위가 중복되는 관련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을 인정하게 되면 2인 이상의 권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디자인권만의 독자적인 전용실시권 설정을 제한하였다.

(바)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 및 전용실시권 설정의 제한 (안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6항 신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 할 수 없게 하였고,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모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 (안 제25조의2)

1) 개정 이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미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창작자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공지증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개정 내용

전문기관의 업무에 미등록 디자인의 공지증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공지기관에 의한 최초 공개는 법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第7條(유사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련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기본디자인의 등록이 게재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전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개정된 제42조(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제까지 유사디자인 제도 하에서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효력을 부인했던 것과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독립된 규정을 두 것이다.

〈신 설〉

第9條(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第23條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移轉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移轉 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함께 移轉 하여야 한다.

第26條(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署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 제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4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이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인 경우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2항 중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3.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관련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본디자인의 등록이 게재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이후에 관련디자인무심사출원된 경우

사.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第40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了日로 한다.

第42條(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合體한다.

第46條(디자인권의 讓渡 및 共有) ①디자인권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讓渡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관련디자인 또는 그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디자인권은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1.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33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3. 제53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4. 제6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4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모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33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3. 제53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4. 제6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③ 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

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無效로 된다.

⑤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無效가 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 (안 제25조의2)

1) 개정 이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미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창작자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공지증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개정 내용

전문기관의 업무에 미등록 디자인의 공지증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공지기관에 의한 최초 공개는 법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현 행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제2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미등록디자인의 공지증명(公知證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및 미등록디자인의 공지증명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미등록디자인을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 회선 등을 통하여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는 때에 그 미등록디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안 제40조제1항)

1) 개정 이유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확대되는 주요국 추세²²⁾와 설문조사 결과²³⁾를 반영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였고, 헤이그 협정과

22)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 하에서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5년이며,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15년에서 20년으로 존속기간을 확대하였다.

23) '08.8.21~29에 진행된 2007년도 디자인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찬성하였고,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그 중 77.9%가 20년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존속기간의 기산점 변경은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복수 디자인제도의 개선²⁴⁾으로 심사·무심사 품목에 상관없이 100개까지 복수디자인출원을 허용하는 한편 일부거절·일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디자인마다 설정등록일이 다르게 될 수 있어 현행처럼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을 산정시 하나의 출원임에도 디자인마다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개정 내용

현재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인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였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종기의 기산점을 설정등록일에서 출원일로 변경하였다.²⁵⁾

현 행	개 정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u>存續期間은 디자인권의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u>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u>存續期間滿了日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存續期間滿了日로 한다.</u>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u>規定에 의하여</u> 디자인권이 설정登錄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u>存續期間은無權利者가 한 디자인권의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起算한다.</u>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u>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의 다음날부터</u> 기산한다.

4.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등록출원 보완제도의 도입 (안 제9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현재 출원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당해 출원서류를 반려 조치(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함으로써 출원인은 하자가 있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헤이그협정의 가입을 위해서는 출원일 인정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2) 개정 내용

제1항에서는 출원일 인정에 관한 요건을, 제2항에서는 절차보완명령의 절차를, 제3항에서는 출원인의 절차보완서 제출절차를, 제4항에서는 절차보완서 제출의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항에서는 절차보완서 미제출시 당해 디자인출원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현 행	개 정
〈신설〉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있지 않거나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하게 적힌 경우

24) 뒤의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참조

25) 우리나라 등록디자인의 평균 존속기간은 51.7개월이며 10년 이상 존속한 건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존속기간 연장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따라 세

계시장에서 성공적인 디자인경영 사례들(삼성전자의 LCD TV '보르도', LG전자의 '초콜릿폰' 등)이 나오고 있고, 각 분야에서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은 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도면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4. 한글로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밟으려는 자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일부 디자인만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한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부적법한 출원으로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지 않은 그 일부 디자인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안 제11조의2 및 제26조제4항 등)

1) 개정 이유

복수디자인출원제도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절차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3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현재 무심사 품목에 한해 20개까지 복수로 출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단지 출원요건 사항으로 심사·무심사등록출원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할 예정인 헤이그협정에서는 같은 로카르노분류(class)에 한해 100개까지 복수출원을 허용²⁶⁾하고 있어 우리 법과의 조화가 필요하였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수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거나 출원공개를 청구할 경우 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해서 청구해야 하며,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비밀청구나 출원공개 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만 가능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2) 개정 내용

심사·무심사등록출원 구분없이 같은 로카르노분류(class)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출원인이 복수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비밀청구, 출원공개청구 또는 우선심사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절결정(또는 등록결정)도 일부거절결정(또는 일부등록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현 행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出願할 수 있다.

개 정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가 같은 것으로 한다.

〈삭 제〉

26) 헤이그협정 공동규칙 제7조(3)(v)



④第3項의 规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대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第13條(비밀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登録일부터 3년이내의期間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秘密로 할 것을請求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請求는 出願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의2(보정각하)

③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第23條의2(出願公開)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신 설〉

第28條(디자인등록결정) 審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3)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안 제28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현행 제도하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오탈자 등과 같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보

〈삭 제〉

제1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정각하)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결정의 이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가 있으면 그 일부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28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정요구서 발송을 통해서만 수정을 할 수 있어 디자인등록요건과 무관한 단순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명백한 오기 등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디자인등록공보의 정확성을 높여 거래업계 등의 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심사관이 직권보정 후 보정된 내용에 대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 행	개 정
<p>〈신설〉</p>	<p>제28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물품의 명칭 또는 그 물품류의 구분에 명백히 잘못 적힌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31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적힌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4)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의 개선 (안 제8조제2항 등)

1) 개정 이유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신규성 상실사유(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일률적으로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가혹한 경우가 있으며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여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2) 개정 내용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시에는 그 주장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증명토록 하였다.²⁷⁾

27)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치계 출원인을 보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등 규정의 취지를 보건대 현행 규정은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시기를 지난치계 한정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규성 상실로 거절되지 않으며,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하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기만 하면 공개행위 등 신규성 상실 사항은 그 디자인의 공개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출원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헤이그협정에는 조약 우선권제도,

전시회 우선권제도는 있으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규정은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시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한편, 한-EU FTA 협정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안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한-EU FTA 이행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검토결과 통보(변사 117-423(2010.6.15))).

**현 행****제8조(新規性喪失의例外)**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意思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第5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出願의分割)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재심사 청구사유의 확대 (안 제27조의2)**1) 개정 이유**

현재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의 보정’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에도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사항 모두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2009년 7월 1일 재심사제도 도입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던 것을 제18조제5항 단서에 되살리는 개정을 하였다.

현 행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意思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第5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제8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7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등록 후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72조의10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삭제〉****제19조(출원의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보정할 수 있고, 제67조의3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5. 기타 개정사항

이상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동일인의 출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안 제5조제3항)²⁸⁾, 심사의 순위에 관한 현행 시행규칙 규정(제16조)을 법에 반영하였으며(안 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헤이그협정 가입을 대비하여 도면에 사진을 포함²⁹⁾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5조제3항 등)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법제처에서 모든 법령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디자인보호법 전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다듬는 작업까지 포함되었다.

현 행

제5條(디자인등록의 요건)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25조의4(우선심사) 특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 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③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가 되거나 제23조의6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도면은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6. 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 등 - 부칙 -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조문 중 일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2년에 시행되는 사항들은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기준, 관련디자인 제도, 복수디자인제도의 개선 등과 같이 그 파급효과가 큰 것들로서 시행시기의 조정에 따른 국민 혼란의 최소화 및 법률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정비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적용례, 심판청구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8) 동일 출원인 간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디자인 또는 부분적인 디자인의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는 제품 전체의 디자인이 먼저 완성되고 그 후에 개개의 구성부품이나 부분적 조형에 관한 상세한 디자인이 결정되며,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에 있어 독자성이 있고 창작성이 높은 부분이 모방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그 부분을 부품이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자신의 제품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일인에 대해서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기 전까지 출원시기의 제한이 있으므로 권리의 실질적인 연장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동일 출원인 간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9) 헤이그협정 제5조(i)(ii), 공통규칙 제9조(i), 시행세칙 제401조(a)에 따르면, 하나의 동일한 국제출원에 흑백 또는 컬러로 표현된 사진과 그래픽 표현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도면과 사진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부 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3항,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제18조의2 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4제1항, 제25조의4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호·제4항, 제27조의2 제1항, 제28조 단서, 제2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6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4제1항, 제25조의4제3항, 제26조, 제27조의2제1항, 제28조 단서,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6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청구 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사항	관련조문	시 행 일	
		공포 후 3월 경과	'12. 1. 1
① 물품에 대한 규정 보완	§ 2-i, § 9①iii, § 9②i, § 72의3①iv		○
② 디자인 창작요건 강화	§ 5②, § 26②ii	○	
③ 도면에 사진을 포함	§ 2-i, § 9①iii, § 9②i, § 72의3①iv	○	
④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 7, § 9①iv, § 9①v, § 18②, § 23의4①, § 26②iii, § 42, § 46①, ⑥, § 47①단서, § 47⑥, § 68③, § 68④, ⑤삭제		○
⑤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개선	§ 8②, § 18③(삭제), § 19②단서		○
⑥ 출원일 인정요건 신설	§ 9의2		○
⑦ 복수디자인제도 개선(선택적 비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신청, 심사 중지, 우선심사, 거절이유통지, 디자인등록결정)	§ 11의2, § 13①단서, § 18의2③단서, § 23의2①단서, § 25의4③, § 26④, § 28단서		○
⑧ 보정시기 보완	§ 18⑤단서 후단	○	
⑨ 디자인공지증명제도 도입	§ 25의2	○	
⑩ 심사순위에 대한 원칙규정 신설	§ 25의4①, ②	○	
⑪ 재심사청구사유의 확대	§ 27의2		○
⑫ 심사관 직권보정제도 도입	§ 28의2		○
⑬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 40		○
⑭ 보호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 43②		○

III. 결 론

이상에서 특허청이 마련한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번 개정법률안은 올 하반기에 있게 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최근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현실적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특허청의 법·제도·인프라 혁신의 2단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의 3단계 전략은 내년에 있게 될 디자인 국제출원시스템의 도입과 선진 법체계 구축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전면 개정이 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3단계 전략의 완성을 통해 디자인 분류와 실체적·절차적 규정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정비를 통해 디자인 창작자 등 고객에게 매력적인 디자인제도로 혁신함으로써 향후 2년 후에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경쟁국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디자인제도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대한민국 디자인제도의 미래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의 지속적인 창작노력과 기업들의 디자인경영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디자인보호 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디자인제도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